|  |
| --- |
| ***KEIT provides this template as draft without assuming any warranty or responsibility. The template itself is not legally binding and should be adapted in order to suit the specific needs and features of the individual project. The use of the text in total or in part takes place on the users own risk and does not release users from legal examination to cover their interests and protect their rights.***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공하는 본 서식은 예시이며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서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과제의 요구사항이나 특수성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각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은 이용자 스스로 부담하며,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면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

**국내 연구개발기관-국외기관간 국제공동연구계약 샘플 서식**

**Template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Research Institute and Overseas Organization**

[계약명]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on the day of (month/year)

BETWEEN:

[국내 연구개발기관명 / 주소]("Party A")

[Name and address of the Research Institute] (“**Party A**”)

and

[국외 기관명 / 주소]("Party B")

[Name and address of the Overseas Organization] (“**Party B**”)

(이하 “Party A” and “Party B”를 합쳐 “당사자들”이라 칭한다 )

(“Party A” and “Party B” will jointly be referred to as “the Parties”)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데 동의한다.

KEIT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지원, 수행 결과의 평가 및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The Parties wish to prescribe all matters necessary to perform the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e research to be jointly performed by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constitutes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s subject to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EIT”) as the Dedicated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KEIT is authorized to fu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under this Agreement, evaluate the performance results, and determine whether to continue or suspend the funding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

**제1조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은 첨부 A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따른다.

**Article 1 (Objective and Details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and details of the Project to be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Project Plan in Schedule A as attached hereto.

|  |
| --- |
| CHECK POINT |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국외기관간 공동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문서로, 과제책임자는 아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목표 (각 연차/단계별 목표 포함)  ∙ 연구개발일정  ∙ 연구개발방법  ∙ 각 당사자 책임 하에 수행할 연구개발범위와 내용  ∙ 연구개발결과를 증빙하기 위한 방법 등 |

**제2조 (용어의 정의)**

(1) Project :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따라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첨부 A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달리 정하지 않는 한, Party A가 대한민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KEIT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3) 연구성과물 : 본 Project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수행 결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연구개발의 유무형적 성과물로서, 공동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이를 기초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특정 물질, 연구 데이터와 연구 프로그램, 노하우, 연구보고서 및 기타 본 연구개발에 기인하여 생성된 제반 기술적 자료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 및 복제, 복사물을 포함한다.

(4) 지식재산권 : 물질, 공정, 포뮬레이션, 기술 정보, 보고서, 사진, 도면, 계획, 사양, 모델, 프로토 타입, 발명품, 패턴, 샘플, 소프트웨어 디자인 또는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상표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기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Article 2 (Definitions)**

“Project” means the research project set forth in Schedule A that the Parties intend to research and develop by inputting workforce and expenses jointly.

“Research Expenses” mea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unded by KEIT to Party A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unless otherwise stipulated.

“Results” mean the result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generated or obtai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or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Project, including technologies, intellectual properties, specific substances, data, program, knowhow and reports based on such technologies, and originals, reproductions, and copies of all or part of other various technical materials or documents derived from the Proj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 the rights to ideas, invention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copyrights, trademarks and trade secrets, and other rights protected b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bstances, processes, formulation, technical information, reports, photos, drawings, plans, specifications, models, prototypes, inventions, patterns, samples, software design, knowhow, etc.

|  |
| --- |
| CHECK POINT |
| ○ 본 계약서상 조문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정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연구개발기간)**

(1)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기간은 [ ]부터 [ ]까지(이하 “연구개발기간”)로 하며, 각 단계별 기간은 첨부 A와 같다.

(2)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rticle 3 (Project Period)**

The period of the Project shall be from [DATE] to [DATE] (the “Project Period”), and the period of each phase is set forth in Schedule A as attached hereto.

The Parties may extend or change the Project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by agreement in writing.

|  |
| --- |
| CHECK POINT |
| ○ 첨부 A의 총 수행기간 및 각 연차/단계별 기간은 국내기관이 KEIT와 체결하는 과제 협약 기간과 일치하거나 그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연구개발기간을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기관-KEIT 간 협약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협약 변경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예 : 변경된 연구개발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에 정한 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 |

**제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1) 본 계약에 따라 Party A가 Party B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금액 및 지급 일정은 첨부 A와 같다.

(2) Party A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a.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또는 예산 변경 등의 사정으로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경우

b. Project의 목적, 내용이나 연구기간 변경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c. 전문기관의 본 과제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 또는 연구개발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 (2)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조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서면 합의로써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모든 지급은 Party B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전신 송금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원화 금액은 실제 지급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 [외화 단위]로 변환한다.

(5) 각 당사자는 각자의 세금 및 부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지급 또는 반환과 관련된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금액을 지급 또는 반환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Article 4 (Payment of Research Expenses)**

(1)　The amount of the Research Expenses payable by Party A to Party B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payment schedules are set forth in Schedule A as attached hereto.

（2）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Party A may adjust the payment amount and schedule for payment of the Research Expenses in the event of any of the following:

a. Where the Research Expenses are adjusted due to changes in the policies or the budget of the Korean government;

b. Where adjustment of the Research Expenses is required due to changes in the objectives or details of the Project or change of the Project Period; or

c. Whe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oject Plan or the Research Expenses due to the Dedicated Organization’s review or evaluation of the Project.

(3)　In the event the Research Expenses are adjusted pursuant to Paragraph (2) above, the Parties may amend the objectiv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by agreement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hereof.

(4) All payments shall be made by wire transfer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Party B. The KRW amount stated in the Project Plan shall be converted into [CURRENCY] based on the basic exchange rate quoted on the actual date of payment.

(5)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taxes and disbursements, and any remittance fees and other costs related to the payment or return of the Research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Party transferring the amount.

|  |
| --- |
| CHECK POINT |
| ○ 첨부 C에 기재된 연구개발비 금액 및 지급 일정이 KEIT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 금액 및 지급 일정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비로, 그 지급 전 다음 서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날인한 국제공동계약서 사본  ∙ 국외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가 이체된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 등 증빙 자료  ○ 본 계약에 따라 국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예산 산정 및 정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외기관으로부터 예산 산정 및 집행, 정산 근거와 기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5조(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1) Party B는 Party A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본 Project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Party B는 해당 기관 자체의 연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 상호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Party B는 각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 및 총 수행기간 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반영된 정산보고서에 Party B의 재무책임자 인증을 받아 Party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Party B는 정산 결과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을 Party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Article 5 (Disbursement and Settlement of Research Expenses)**

(1) Party B shall expend the Research Expenses paid by Party A for the objectives and purpose of the Project in a transparent way.

(2) Party B shall expend the Research Expens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use of research expenses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3)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Party B shall submit the statement of accounts stating the details of the use of the Research Expenses, signed by its chief financial officer, to Party A within [\*] days from the last day of each phase of the Project Period and the last day of the total Project Period.

(4) Party B shall return to Party A any balance of the Research Expenses remaining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if any.

|  |
| --- |
| CHECK POINT |
| ○ 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지정된 위탁회계기관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외기관의 정산보고서 제출 일정은 위 기간 이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수 잔액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수 조항은 아니나, 국외기관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국외기관 자체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 의무 등 |

**제6조(계약의 변경)**

Party A와 Party B는 서면 합의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Article 6 (Amendment)**

Party A and Party B may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by agreement in writing.

|  |
| --- |
| CHECK POINT |
| ○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지만, 국내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간 협약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책임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통보 또는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예: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목표나 내용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  ○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협약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Party A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a. 첨부 A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  b. 첨부 A에 따른 연구기간의 연장  c.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an amendment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require the prior approval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a. Amendment to the objectives and details of the Project set forth in Schedule A;  b. Extension of the Project Period under Schedule A; and  c. Change of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Expenses |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1)Party B는 첨부 A에 정한 매 연차 종료 [ ]일 전까지 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Party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Party B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 ]일 이내에 최종 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Party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당사자들은 연구기간 중 [매 분기/매년)] 1회씩 본 과제의 진척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점검회의를 가질 수 있다.

(4) Party A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추가 지급 없이 Party B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7 (Reporting and Evaluation of Results)**

(1) Party B shall prepare and submit a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to Party A no later than [\*] days before the end of each year as set forth in Schedule A attached hereto.

(2) Party B shall prepare and submit the final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to Party A within [\*] days after the end of the total Project Period.

(3) The Parties may hold a meeting for interim review to check the progress of the Project once every [quarter/year] during the Project Period.

(4) Party A may, if necessary, request Party B to revise or supplement the report mentioned in Paragraph (1) or (2) without additional payment.

|  |
| --- |
| CHECK POINT |
| ○ 국내기관은 매 연차 종료 1개월 전 및 총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외기관의 연구수행결과 보고서를 그 이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외기관의 적절한 연구 진행 여부를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항 외에도 중간보고회의 개최시 참석 의무, 기타 국내기관의 개발 일정에 맞춘 중간 점검 절차의 마련 및 협조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의 보완에 대해 협조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기간 종료 후 결과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4)항과 같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하거나 실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제8조(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

**[공통]**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한 지식 재산은 ‘연구성과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Project’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각 당사자는 ‘Project’ 수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rticle 8 (Rights to Results)**

(1) Neither Party shall, by virtue of this Agreement,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or acquired outside of this Agreement or that are owned by the other Party prior to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each Party shall be granted a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other Party’s know-ho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during the Project Period for the limited purpose of performing the Project.

|  |
| --- |
| CHECK POINT |
| ○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하거나 발생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할 것인지  • 공동소유하는 성과물의 지분율 또는 지분율 측정을 위한 기여도 산정  • 단독소유하는 성과물에 대해 다른 당사자의 실시 조건(지역적 제한 유무, 영리/비영리 목적, 유상/무상, 독점적/비독점적,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 공동소유하는 성과물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자기실시 범위에 제한을 둘 것인지, 제3자 실시허락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 실시 수익의 배분 여부 및 범위, 권리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특히 국외기관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방법과 지역,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권리를 공동연구 단계에서부터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상대방 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출한 권리에 대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지식재산권을 공개하고 그러한 권리를 유지 및 관리하며, 상대방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문서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The Party whose personnel has cre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promptly disclo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maintain and manage such rights and furnish any documentation or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rights to which it may be entitled.  ○ 본 서식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제시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제1유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 단독소유  • 제2유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국외기관 공동소유  • 제3유형 : 각자소유와 공동소유를 병행하는 경우 |

**[유형 1 : 국내 연구개발기관 단독소유, 국외기관 실시권 보유]**

(2) ’Project’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Party A’에게 귀속된다.

(3) ‘Party B’는 ‘연구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지역적 범위 기재]에서 [무상/유상]으로 [독점적으로/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Party B’는 ‘Party A’의 서면 동의 없이 제3항에 따른 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락,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Party B’는 ‘연구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데이터, 연구 보고서 등 연구 자료를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이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Type 1: Results are solely owned by the Research Institute and licensed to the Overseas Organization]**

(2) All rights to the Results creat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Project shall be vested in Party A.

(3)Party A grants to Party B a [royalty-free/royalty-bearing] and [exclusive/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Results in the [territory].

(4) Party B shall not permit, assign or provide as security the license granted under Paragraph (3) abov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Party A.

(5) Party B shall be granted a non-exclusive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research materials, such as research data, research report, etc., of the Results, which do not co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 --- |
| CHECK POINT |
| ○ 지역적 범위(예: Party B 소재 국가 등)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Party B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용실시(독점적 실시) 또는 통상실시(비독점적 실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유형 2 : 국내 연구개발기관-국외기관 공동소유, 실시 수익의 배분]**

(2) ’Project’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들이 공동소유한다.

(3) 각 ‘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의 지분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4) 당사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지분 협의 결과 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지 않는 당사자는 해당 ‘연구성과물’에 대해 [유상의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실시료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5)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지분 협의 결과 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당사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6)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지분 협의 결과 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당사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7) 각 당사자의 자기실시 또는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a. 각 당사자가 자기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별도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분한다.

b.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제3자의 실시로 인해 수익을 받은 당사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8) 본 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공동 명의로 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그 권리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의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단독 명의로 권리 출원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

(9) ‘Party B’는 ‘연구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데이터, 연구 보고서 등 연구 자료를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이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Type 2: Results are jointly owned and royalties are shared by the Parties]**

(2) All rights to the Results creat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Project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3) Each Party’s share in the rights to the Results shall be separately agreed by the Parties based on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4)　The Parties shall be granted a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is Article;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ose Results to which a Party does not hold any share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Party shall be granted a [royalty-bearing and non-exclusive license] to the relevant Results. In such case,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a separat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terms of royalty and payment.

(5)　Each Party shall not assign or provide as security its share in the Results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it will not be required to obtain consent from the Party who does not hold any share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6)　Each Party shall not grant a licens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other Party’s written consent; provided that will not be required to obtain consent from the Party who does not hold any share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7）If revenues are generated from each Party’s own use or grant of license to a third party, su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as follows:

a. If revenues are generated from each Party’s own use of license, su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as separately agreed by the Parties; or

b. If revenues are generated from each Party’s grant of license to a third party, su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 to each Party’s respective shar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8) If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with respect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is Article, it shall be made in the joint name of the Parties. The costs and expense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ights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shar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f a Party files the patent application or makes the registration in its own name,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ransfer the respective share.

(9) Party B shall be granted a non-exclusive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research materials, such as research data, research report, etc., of the Results, which do not co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 --- |
| CHECK POINT |
| ○ 공동소유하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분율을 본 계약으로 정하거나 지분율을 정하는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3)항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정한 경우의 예시 조항으로, 실무상 기여도에 따른 지분을 추후 합의하기 쉽지 않으므로, 동일 지분 보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각 ‘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의 지분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한 각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Each Party’s share in the rights to the Results shall be separately agreed by the Parties based on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 (4)항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의 실시권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실시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실시료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생략합니다.  ○ (6)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실시권의 내용, 범위, 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If a Party grants a license to a third party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such Party shall promptly deliver a copy of the license agreement, including contents, scope, conditions, etc. of the license, to the other Party.”  ○ 공동소유한 성과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7)항이 추가됩니다. 수익에 대해 별도 배분하지 않는 합의도 가능하고(이 경우 7항은 삭제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수익을 각자 소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수익 배분의 범위나 계산 방법 등은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항은 자기실시를 통한 수익 및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을 통한 수익을 모두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의 예시 조항입니다. 만약 자기실시를 통한 수익은 각자에 귀속시키고,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을 통한 수익만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If a Party generates revenue from its own use of the license, such Party shall not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if the Party generates revenue from granting a license to a third party, su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 to the respective share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 (8)항은 공동소유하는 성과물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비용 부담 방법과 범위 등은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형 3 : 각자소유와 공동소유를 병행하는 경우]**

(2) 본 과제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귀속된다.

a. 각자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창출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해당 당사자가 소유한다.

b.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창출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연구당사자들이 공동소유한다. 당사자들이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의 지분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단독소유하는 ‘연구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지역적 범위 기재]에서 [무상/유상]으로 [독점적으로/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Party B가 단독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Party A 또는 Party A가 지정한 국내 타 연구개발기관이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Party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권의 내용, 범위 조건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4) 당사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지분 협의 결과 지분을 갖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당사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6) 각 당사자의 자기실시 또는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a. 각 당사자가 자기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별도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분한다.

b.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실시권의 내용, 범위, 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의 실시로 인해 수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7) 공동소유하는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당사자들의 공동 명의로 하며,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그 권리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단독 명의로 권리 출원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

(8) Party B는 저작권, 발행된 특허, 특허 출원 청구 또는 영업 비밀 성격의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수행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발견 및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이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Type 3: Combination of sole ownership and joint ownership]**

(2) The rights to the Results creat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Project shall be vested as follows:

a. The right to the Results solely developed or created by a Party shall be owned by such Party.

b. The right to the Results jointly developed or created by the Partie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The respective share in the rights to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shall be separately agreed by the Parties based on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3) Each Party shall be granted a [royalty-free/royalty-bearing] and [exclusive/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sults solely owned by the other Party in the [territory]. Provided, however, that if Party A or other research institute in Korea designated by Party A requests for a license with respec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lely owned by Party B,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a separat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terms related to such license.

(4) The Parties shall be granted a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is Article.

(5) Each Party shall not assign or provide as security its share or the license granted under Paragraph (3), or grant a license to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it will not be required to obtain consent from the Party who does not hold any share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6) If licensing revenue generates from each Party’s own licensing or granting the license to a third party, etc., ea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as follows:

a. If the licensing revenue generates from each Party’s own licensing, each Party shall share the revenue with the other Party as separately agreed upon; or

b. If a Party grants the license to a third party with the other Party's written consent, the Party shall immediately deliver the other Party a copy of the license agreement, including the details, the scop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icense. In this case, the Party who received the revenue from the license granted to the third party shall share the payment with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 to the shareholding ratio unless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7) If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with respect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sults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it shall be made in the joint name of the Parties. The costs and expense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ights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shar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f a Party files the patent application or makes the registration in its own name,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ransfer the respective share.

(8) Party B shall be granted a non-exclusive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research materials, such as research data, research report, etc., of the Results, which do not co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 --- |
| CHECK POINT |
| ○ 각자 소유하는 성과물과 공동소유하는 성과물을 모두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항으로, 실제 연구수행 과정에서 공동의 기여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인정 기준을 협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각자 소유하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3)항과 (5)항이 적용되며, 공동 소유하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4)항과 (5)~(7)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모두 예시조항으로, 각자 합의한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은 위 유형 [1] 및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진술 및 보증)**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a.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예상되는 조치들을 수행할 전권을 가지며 본 계약의 체결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이행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의무의 위반을 야기하지 않는다.

b. 각 당사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합당한 기술과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태도로 본 과제를 수행한다

(2) 각 당사자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작업이나 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장도 하지 않으며 오류나 누락이 자신의 부주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한, 그러한 오류나 누락에서 기인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Article 9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 Each Party warrants the following:

a. Each Party has full power and authority to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entry into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will not infringe the rights of any third party or cause it to be in breach of any obligations to a third party.

b. Each Party will perform the Project in a professional manner with reasonable skill and care, using suitably qualified personnel.

(2)　While each Party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work performed and information provided by it during the course of the Project, such Party makes no warranty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accuracy of such work or information and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 arising out of any inaccuracies or omissions unless such inaccuracies or omissions are the result of negligence on the part of such Party.

|  |
| --- |
| CHECK POINT |
| ○ 진술 및 보증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동연구 내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Party B는 제3조의 연구기간 및 본 과제 종료 후 1년 동안에는 Party A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와 본 과제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다만, Party A는 Party B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와의 사이에 권리 저촉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Party B의 동일 내지는 유사 연구개발활동에 동의해야 한다.”  “Party B warrants that it will not engage in any research activities same as or similar to the Project with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Party A during the Project Period specified in Article 3 hereof and a period of one (1) year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provided that* upon request of Party B, Party A shall provide its consent to Party B’s research activities same as or similar to the Project, unless there is a cause for violating the right of a third party.” |

**제10조(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 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a.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프로젝트의 수행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b.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c.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전문기관-Party A 사이의 협약이 해지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d. 그밖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공동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항에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본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Party B는 해지된 날부터 30일까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및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Party A에게 제출하고, Party A와 협의하여 잔여 연구개발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Article 10 (Termination)**

（１）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written notice if the other Pa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difficult to achieve due to the other Party’s failure to cooperate in performing the Project for no justifiable cause;

b. The other Party has engaged in illegal or wrongful acts in performing this Agreement;

c. The agreement between the Dedicated Organization and Party A is terminated, or the Project is suspended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by the Dedicated Organization; or

d.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Project due to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both Parties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hereof.

(3) In case of a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Party B shall submit the statement of accounts of the Research Expenses and report on the Results to Party A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ermination and return any remaining Research Expenses in consultation with Party A.

**제11조(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그 피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rticle 11 (Indemnification)**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gainst any damages incurred by the other Party due to intentional acts or negligence of such Party or its employees up to the amount of Research Expenses paid under this Agreement.

**제12조(불가항력)**

(1) 어느 당사자가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협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영향으로 지연 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본 협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본 협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불가항력이 종료된 후에도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Article 12 (Force Majeure)**

(1) Neither Party will be liable to the other or deemed in default hereunder for any failure to perform or delay in performing this Agreement due to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fire, flood, act of God, strike, riot, civil commotion, war or other hostilities.

(2) The Party whose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tigate any such delay in performance. The affected Party shall promptl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when it ceases to be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제13조(계약의 양도 등)**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지위 또는 의무를 상대방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Article 13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subcontract this Agreement or its rights and obligations hereunder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제14조(연구결과의 공개)**

(1) 당사자들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발표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만일 상호 협의 없이 외부 기관 등에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한 경우,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연구개발 결과를 연구보고서,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동 연구개발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KEIT의 사업비 지원에 의한 것임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과제번호, 과제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Article 14 (Publication of Results)**

(1) The timing, content and method of disseminating or publishing the Results will be agreed by the Parties in advance. If either Party publishes the Results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for it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filing of patent applications.

(2) KEI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 acknowledgment of the funding of the Project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r KEIT in any such publication as follows:

“This Project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KEIT project number, KEIT project name])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제15조 (정보교환)**

(1) 각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가 연구성과물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rticle 15 (Exchange of Information)**

(1) Each Party may request the other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the Project under this Agreement. In such case, the Party being requested may not unreasonably refrain from providing such information to the other.

(2) If any third party’s right prevents a Party from licensing the Results, such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of such fact for it to take necessary measures.

|  |
| --- |
| CHECK POINT |
| ○ 위 조항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

**제16조(비밀유지)**

(1)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정보가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의무는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서도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기밀로 유지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a. 당사자에게 공개되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b.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공지의 영역에 속한 정보;

c. 당사자에게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획득한 정보;

d.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것이 요구되는 정보;

(3)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
| --- |
| CHECK POINT |
| ○ 비밀유지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Article 16 (Confidentiality)**

(1) The Parties shall not disclose or permit or cause to be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any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and/or materials of the disclosing Party obtained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or use it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disclosing Party. In addition, in handling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and/or materials of the other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use the same degree of care that it uses to protect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or materials of similar value,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ordinary degree of care required by law to preserve the secrecy of information that under such law is deemed confidential.

(2)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exceptions to confidentiality:

a. Information that is presently known or becomes known to the receiving Party from its own independent sources;

b. Information that is now in the public domain or subsequently enters the public domain through no fault of the receiving Party;

c. Information that the receiving Party receives from any third party not under any obligation to keep such information confidential;

d.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to be disclosed by law.

(3)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f either Party disclosed by it to the othe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wi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제17조 (통지)** 각 당사자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 A의 연구개발계획을따른다. 이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수취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선불 특급 우편 기타 검증 가능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 수취인이 해당 우편 등을 수신한 날짜 또는 전자메일 기재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주소의 변경은 서면 통지로 하며 그 이후부터 유효하다.

**Article 17 (Notices)**

The names, postal addresses, tele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the Parties are provided in the Project Plan in Schedule A as attached hereto. Any communications required by this Agreement, if given by postage prepaid first-class mail or other verifiable means addressed to the Party to receive the communication, shall be deemed made as of the day of receipt of such communication by the addressee, or on the date given if by email. Address changes shall be made by written notice and shall be effective thereafter.

**제18조(해석 및 준거법, 관할)**

**[공통]**

(1) 본 계약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문의 해석에 따른다.

**Article 18 (Languag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prepared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nd if there is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wo versions in interpretation hereof,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유형 1 : 대한민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3)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Party A의 관할지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Type 1: If the Parties agree to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Korea:**

(2)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by mutual negotiation, provided that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n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유형 2 : 국외기관 소재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Party B의 소재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3)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Party B의 소재 국가]의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Type 2: If the Parties agree to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Overseas Organization is located:**

(2)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Party B is located].

(3)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by mutual negotiation, provided that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Party B is located]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n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유형 3 : 분쟁의 상대방 소재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3)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Type 3: If the Parties agree to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respondent Party’s country:**

(2)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spondent Party’s country.

(3)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by mutual negotiation, provided that the courts of the respondent Party’s country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n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유형 4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따르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3)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중재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수행기관들은 해당 판정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수행기관 사이의 모든 분쟁과 관련한 유일한 판정으로 그 수행기관들을 구속하는 배타적인 최종 판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이에 합의한다. 각 수행기관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수행기관이 특정 국가의 법원에 대하여 보유할 수도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본 규정은 각 수행기관(또는 그 수행기관의 자산)에 대하여 해당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법원에 적용된다.

**[Type 4: If the Parties agree to the governing law of Korea and to resolve the dispute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Korea:**

(2)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by mutual negotiation, provided that if a dispute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Seoul, Korea.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English],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wi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and may be enforc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Each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challenge or resist the enforcement action taken by the Party in whose favor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as given and expressly waives all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would otherwise give the right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o any court or other tribunal.

**[유형 5 : 제3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따르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XXX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3)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XXX]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XXX]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중재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지는 [XXX]로 한다. 수행기관들은 해당 판정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수행기관 사이의 모든 분쟁과 관련한 유일한 판정으로 그 수행기관들을 구속하는 배타적인 최종 판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이에 합의한다. 각 수행기관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수행기관이 특정 국가의 법원에 대하여 보유할 수도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본 규정은 각 수행기관(또는 그 수행기관의 자산)에 대하여 해당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법원에 적용된다.

**[Type 5: If the Parties agree to the governing law of a neutral country and to resolve the dispute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an arbitration tribunal in a neutral country:**

(2)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COUNTRY – England and Wales / State of New York / Singapore, etc.].

(3)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Parties by mutual negotiation, provided that if a dispute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ICC / SIAC / HKIAC, etc.]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OUNTRY – England and Wales / Singapore / Hong Kong, etc.].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English],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wi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and may be enforc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Each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challenge or resist the enforcement action taken by the Party in whose favor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as given and expressly waives all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would otherwise give the right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o any court or other tribunal.

|  |
| --- |
| CHECK POINT |
| ○ (1)항은 영문으로만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 준거법 및 분쟁관할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분쟁 절차를 진행하는 조항이 가장 유리할 것이나, 국외기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 1] 대한민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유형 2] 국외기관 소재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유형 3] 분쟁의 상대방 소재국 법률과 관할을 따르는 경우  [유형 4]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절차를 따르는 경우  [유형 5] 싱가포르, 뉴욕 등 제3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국제중재 절차를 따르는 경우] |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Party A와 Party B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IN WITNESS WHEREOF, Party A and Party B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in duplicate originals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and each Party retains each signed original.

|  |  |
| --- | --- |
| [Research Institute]  By: \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  Title: | [Overseas Organization]  By: \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  Title: |

**첨부 A [Schedule A]**

**연구개발계획서**

**Project Plan**

1. **연구개발과제명 (Name of the Project) :**
2. **연구기간 (Project Period )**

* 총 연구기간 : 202 . . . ~ 202 . . .

Total Project Period: from [DATE] to [DATE]

* 각 단계별 연구기간

Project Period of Each Phase

|  |  |
| --- | --- |
| 단계/Phase | 기간/Period |
| 1단계/Phase 1 | 1차년도 : 202 2.4 .1 . ~ 2023 . 3.31 .  1st year: from [date] to [date] |
| 2차년도 : 202 . . . ~ 202 . . .  2nd year: from [date] to [date] |
| 3차년도 : 202 . . . ~ 202 . . .  3rd year: from [date] to [date] |
| 4차년도 : 202 . . . ~ 202 . . .  4th year: from [date] to [date] |
| 2단계/Phase 2 | 5차년도 : 202 . . . ~ 202 . . .  5th year: from [date] to [date] |
| 6차년도 : 202 . . . ~ 202 . . .  6th year: from [date] to [date] |
| 7차년도 : 202 . . . ~ 202 . . .  7th year: from [date] to [date] |

※ 연구기간은 KEIT의 평가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구기간 변경 및 연장은 KEIT 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The Project Period may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KEIT and changes in the budget and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 Change or extension of the Project Perio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subject to KEIT’s prior approval.

**3. 연구책임자 (Principal Researcher )**

각 당사자들은 연구책임자에 관한 아래 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Principal Researcher:

**3.1. [국내 연구개발기관명/Name of Lead Research Institute]**

|  |  |
| --- | --- |
| 이름/Name |  |
| 직위/Position |  |
| 주소/Address |  |
| 전화번호/Phone No. |  |
| 이메일/E-mail |  |

**3.2. [국외기관명/Name of Overseas Organization]**

|  |  |
| --- | --- |
| 이름/Name |  |
| 직위/Position |  |
| 주소/Address |  |
| 전화번호/Phone No. |  |
| 이메일/E-mail |  |

**4. 연구개발 목표 (Objectives of the Project**

본 계획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 및 KEIT의 승인을 필요로 함

The Project objectives and details of this Plan may not be chang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 approval of KEIT.

**4.1. 최종 목표 (Final Objective)**

**4.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Annual Objective and Details)**

**4.3. 각 당사자별 연차별 과업 (Annual Tasks for Each Party)**

**4.4. 연구성과물 (Results)**

**5. 연구개발비 예산 (국외기관)**

**Budge for Research Expenses (for the Overseas Organization)**

**5.1. Party B의 연구개발비 예산**

* 연구개발비 총액 : (단위)
* Party A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 (단위)
* Party B가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단위)

Below is the budget for Party B’s Research Expenses:

* The total amount of the Research Expenses: (Unit)
* Research Expenses payable by Party A: (unit)
* Research Expenses to be borne by Party B: (unit)

**5.2. Party A가 Party B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금액 및 일정**

The amount of the Research Expenses payable by Party A to Party B and the payment schedules are as below:

|  |  |  |  |
| --- | --- | --- | --- |
| 단계/Phase | 연차/Year | 지급액(단위: )  /Amount (Unit: ) | 지급기한  / Payment Due Date |
| 1단계/Phase 1 | 1차년도  1st year |  | 202 . . . |
| 2차년도  2nd year |  | 202 . . . |
| 3차년도  3rd year |  | 202 . . . |
| 4차년도  4th year |  | 202 . . . |
| 2단계/Phase 2 | 5차년도  5th year |  | 202 . . . |
| 6차년도  6th year |  |  |
| 7차년도  7th year |  |  |

※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정책 및 집행 일정 등에 따라, KEIT가 Party A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지원 시점이 지급기한 이후일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Party B에게 지급하기로 함

※ 지급기한까지 Party B가 본 계약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시까지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The payment schedule of the Research Expenses payable by KEIT to Party A may change depending on the budget policy and execution schedul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f such payment is made after the scheduled payment due date, it will be paid to Party B within seven (7) days after the Korean government pays to Party A.

※ If Party B fails to submit the documents requested under this Agreement by the payment due date, payment may be withheld until its submission.

**5.3. 연구개발비 예산 세부 항목**

**5.3. Detailed Items of Budget for Research Expenses**

[국외기관 예산 비목, 용도 및 금액, 기준 통화를 해당 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

[The items of expenditure, purpose, and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Overseas Organization and the base currency shall be stated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relevant institute.]

**6. 참여연구원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 가능] (Participating Researchers [This item may be deleted, if necessary])**

**6.1. [국내 연구개발기관명/Name of Lead Research Institute]**

|  |  |  |
| --- | --- | --- |
| 이름/Name | 직위/Position | 이메일/Email |
| OOO |  |  |
|  |  |  |
|  |  |  |
|  |  |  |

**6.1. [국외기관명/Name of Overseas Organization]**

|  |  |  |
| --- | --- | --- |
| 이름/Name | 직위/Position | 이메일/Email |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Research Institute]**  **By: \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  **Title: Principal Researcher** | **[Overseas Organization]**  **By: \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  **Title: Principal Researcher** |